

공 장 심 사 보 고 서

S마크, V체크마크 / 신규, 사후관리, 변경

신청일 :

심사일 :

1. 공장일반현황

업 체 명						대표자			
소재지	본사					전 화			
	공장					전 화			
자 본 금		백만원		공장규모		대 지		㎡	
						건 물		㎡	
신 청 품 목		생산능력		/년		매출실적		/년	
		생산실적		/년		수출실적		/년	
기 타 품 목		생산능력		/년		매출실적		/년	
종업원	중 역	사무직	기술직	기 타	계	기 술 자 격 자 현 황			
기 타 특기사항									

2. 공장심사 성적서

공장명 :

품목 :

구 분	심 사 항 목	배점	평점	비고
계				

심사원 : (인)

심사원 : (인)

[별첨 1]

공장심사기준

구 분	심사항목	세 부 심 사 내 용	배점	비고
1. 일 반 관 리 (20)	1) 경영자의 열의도 (10)	가. 경영자의 외부교육을 이수하였는가?	2	
		a. 3년 내에 품질관리교육을 이수한 경우	(2)	
		b. 과거에 품질관리교육을 이수한 경우	(1)	
		나. 품질관리에 대한 열의와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2	
		a. 교육을 이수하고 열의가 있는 경우	(2)	
		b.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어도 열의가 있는 경우	(1)	
		다. 품질관리 장단기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	2	
		a. QM 장단기계획을 수립한 경우	(2)	
		b. QM 단기계획을 수립한 경우	(1)	
		라. 경영자 기본방침이 설정되어 있는가?	2	
	a. 기본방침이 설정되어 실시되는 경우	(2)		
	b. 기본방침만 있는 경우	(1)		
	마. 사내표준화 및 QM 도입확산에 노력하고 있는가?	2		
	a. 사규 및 분임조 조직이 있는 경우	(2)		
	b. 사규 일부만 제정되어 있는 경우	(1)		
	2) 작업환경 (10)	가. 작업장의 청결상태는 양호한가?	2	
a. 작업장의 원부자재 및 완제품 구분을 할 수 있게 정리된 경우		(2)		
b. 작업장의 원부자재와 완제품이 구분이 되어도 청결상태가 미흡한 경우		(1)		
나. 작업장의 조명 및 환기장치 등은 양호한가?		2		
a. 조명 및 환기장치가 양호한 경우		(2)		
b. 조명 및 환기장치가 다소 미흡한 경우		(1)		

구 분	심사항목	세 부 심 사 내 용	배점	비고
2. 품 질 관 리 (25)	1) 품질관리 일 반 (5)	다. 작업에 필요한 치공구가 사용하기 쉽게 배치되어 있는가?	2	
		a. 치공구 배치가 양호한 경우	(2)	
		b. 다소 미흡한 경우	(1)	
		라. 안전관리규정이 적절히 마련되어 있는가?	2	
		a. 규정이 제정되어 있는 경우	(2)	
		b. 규정은 없고 세척 등으로 운영하는 경우	(1)	
		마. 안전관리에 대한 각종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가?	2	
		a.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2)	
		b. 필요시에만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1)	
		가. 품질관리조직이 실제로 존재하는가?	1	
		나. 품질관리 기능을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원이 확보되어 있는가?	1	
		다. 품질검사부서가 기능상 독립되어 있는가?	1	
		라. 제안 활동 및 QM교육은 적절히 수행 되고 있는가?	2	
		a. 적절히 실시하고 있는 경우	(2)	
b. 일부만 실시되고 있는 경우	(1)			
2) 표준관리 (5)	가. 자재 및 중요부품에 대한 규격이 있는가?	1		
나. 제품규격은 보유하고 있는가?	1			
다. 제품 및 중요자재에 대한 규격내용이 해당제품의 품질보증에 적합성이 있는가?	1			
라. 사내규격 배포 및 보관 등 관리상태가 양호한가?	1			
마. 각 부서 담당자는 해당규격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	1			

구분	심사항목	세부심사내용	배점	비고
	3) 자재관리 (5)	가. 주자재에 대한 인수검사를 실시하고 있는가?(KS표시품 또는 납입자 성적서로 인수검사를 생략할 수 있음)	1	
		나. 인수검사를 규격대로 실시하고 있는가?	2	
		a. 규격대로 실시하는 경우	(2)	
		b. 다소 미흡한 경우	(1)	
		다. 자재 및 부품의 정리정돈상태는 양호한가?	1	
		라. 자재의 입출고현황이 정확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1	
	4) 공정관리 (5)	가. 공정도가 현장에 비치되어 있는가?	1	
		나. 공정도의 내용이 실제 작업공정내용과 잘 부합되며 현장 작업자나 관리자가 공정도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	1	
		다. 작업표준 또는 지도서가 구비되어 있는가?	1	
		라. 공정에서 발생하는 불량에 대한 대책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1	
		마. 자주검사 또는 중간검사가 실시하고 있는가?	1	
	5) 제품관리 (5)	가. 제품검사는 제품검사 규격대로 실시하고 있는가? (외부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로 제품검사를 생략할 수 있음)	1	
		나. 검사실시내용의 기록 및 보관상태가 양호한가?	1	
		다. 제품의 보관 및 관리상태가 양호한가?	1	
		라. 불량요인에 대한 요인분석 및 이에 대한 대책은 적절히 수립되고 있는가?	1	
마. 불합격증은 처리기준에 따라 적절히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1		

구분	심사항목	세부심사내용	배점	비고
3. 전문 기술 (40)	1) 생산검사 설비 (20)	가. 필요한 제조설비를 갖추었는가? a. 제조설비를 전량보유하고 있거나, 외주관리 규정에 따라 관리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 b. 제조설비 외주관리규정은 있으나 관리가 미흡한 경우 c. 제조설비 외주관리규정은 없으나 관리를 실 시하고 있는 경우 d. 제조설비 외주관리 규정이 없고 관리가 미흡한 경우 나. 제조설비가 적정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인가? a. 적정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 b. 다소 미흡한 경우 다. 설비의 배치상태는 적정한가? a. 양호한 경우 b. 다소 미흡한 경우 라. 제조설비 점검기준이 마련되어 있는가? a. 규정이 제정되어 실시하는 경우 b. 실시만 하는 경우 마. 점검기준에 따른 점검실시실적이 양호한가? a. 양호한 경우 b. 다소 미흡한 경우 바. 필요한 검사설비를 갖추고 있는가? a. 해당설비를 전량 보유한 경우 b. 80%설비를 보유한 경우 c. 60%설비를 보유한 경우 d. 50%설비를 보유한 경우 * 설비사용계약을 한 경우 또는 제품검사 를 외부공인기관에 의뢰하는 경우 설비 를 보유한 것으로 본다. 사. 검사설비에 대한 검교정을 실시하고 있는가? a. 외부 검교정을 실시하는 경우 b. 일부 미흡한 경우	4 (4) (3) (2) (1) 2 (2) (1) 2 (2) (1) 2 (2) (1) 2 (2) (1) 4 (4) (3) (2) (1) 2 (2) (1)	

구 분	심사항목	세 부 심 사 내 용	배점	비고
		아. 시험 검사설비의 보관 및 점검관리 상태는 양호한가? a. 양호한 경우 b. 다소 미흡한 경우	2 (2) (1)	
	2) 기술수준 (10)	가. 당해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 중 품질수준이 상위그룹인가? a. 품질수준이 상인 경우 b. 품질수준이 중인 경우 c. 품질수준이 하인 경우 나. 양산체계로 개발 설계할 수 있는가? a. 제품의 설계 생산기술이 양산체계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 b. 제품의 설계 생산기술이 양산체계에 미흡한 경우 다. 기술 데이터의 분석 및 활용여부는 양호한가? 라. 당해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을 갖추고 있는가? a. 생산경험이 5년 이상인 자를 확보한 경우 b. 생산경험이 3년 이상인 자를 확보한 경우 마. 외주품질파악을 위한 자료는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가? (외주가공이 없는 경우 a로 평가) a. 외주품에 대한 검사성적서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가? b. 외주품에 대한 검사만 하고 있는 경우	3 (3) (2) (1) 2 (2) (1) 1 2 (2) (1) 2 (2) (1)	
	3) 제품개발 (10)	가. 제품설계에 요구품질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가? a. 소비자 요구 품질정보수집이 된 후 설계가 된 경우 b. 정보수집이 집계되지 않고 제품설계가 된 경우	2 (2) (1)	

구 분	심사항목	세 부 심 사 내 용	배점	비고
4. 유통 관리 (15)	1) 소비자 보호 체계 (15)	나. 제품개발 내용변경 시 신속한 조치가 취 하여지고 있는가?	2	
		a. 설계된 내용의 변경 조치상태가 양호한 경우	(2)	
		b. 다소 미흡한 경우	(1)	
		다. 개발 단계별 품질확보를 위한 품질평가 가 실시되고 있는가?	2	
		a. 단계별로 시험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2)	
		b. 다소 미흡한 경우	(1)	
		라. 제품품질개선을 위한 대책이 수립되고 있는가?	2	
		a. 품질개선을 위한 자료수집 및 정보수집 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는 경우	(2)	
		b. 자료수집 및 정보수집이 다소 미흡한 경우	(1)	
		마. 타사 또는 외국제품과 품질평가를 실시 하여 그 결과를 제품에 반영하고 있는가?	2	
		a. 타사 또는 외국제품과 품질비교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고 있는 경우	(2)	
		b. 품질비교 시험만 하는 경우	(1)	
		가. 소비자 불만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체제가 구비되어 있고 그 내용이 적절한가?	3	
		a. 규정 및 전담조직이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3)	
		b. 규정이 없이 전담조직만 되어 운영하고 있는 경우	(2)	
c. 전담부서는 없어도 불만을 접수, 처리 하는 경우	(1)			

구 분	심사항목	세 부 심 사 내 용	배점	비고
		나. 소비자 불만처리실적이 있고 그 처리내용이 양호한가? a. 불만처리실적이 있고 그 처리내용이 양호한 경우 b. 처리내용이 일부 미흡한 경우 c. 처리내용이 매우 미흡한 경우 다. 소비자나 대리점등을 통하여 시장정보를 주기적으로 수집하고 있는가? a. 양호한 경우 b. 다소 미흡한 경우 c. 매우 미흡한 경우 라. 수집내용을 분석 검토하여 활용한 실적이 있는가? a. 활용한 실적이 있는 경우 b. 분석검토만 한 경우 마. 사규 등에 사용설명서나 그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가? a. 사규에 명시된 경우 b. 사용설명서만 있는 경우 바. 품질표시나 사용설명서의 내용이 명확하고 적절하여 소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가? a. 양호한 경우 b. 다소 미흡한 경우	3 (3) (2) (1) 3 (3) (2) (1) 2 (2) (1) 2 (2) (1) 2 (2) (1)	